



2002년 수의위생시책

이 희 우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장

서 론

2002년은 돌이켜보면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남북화해 및 교류증진을 바탕으로 통일을 향한 디딤돌들을 하나 더 놓아 상호공존의 틀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한해이고, 경제적으로도 IMF사태 극복을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경제의 기초체질을 선진형 경제체계로 전환함으로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호를 만들어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초석을 다진 한해이기도 했다.

수의업계의 측면에서도 지난 해는 1924년이래 66년만에 처음으로 2000년 3월24일 경기도 파주에 처음 발생되어 4월 16일 충남 홍성에서 마지막 발생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구제역을 그간 축산업계 등 전 국민적 노력으로 2001년 9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조기에 국제적으로 구제역 비

발생국으로 인정을 받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쾌거를 이룸으로서 우리 수의업계의 저력을 널리 알린 한 해이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축산업계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던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현재 일본 등과 협상중에 있다.

축산식품위생과 관련하여 지난해는 1998년 축산식품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된 이후 선진적 축산식품 위생관리체계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도축장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위해요소종점관리제도(HACCP)가 국내에 축산물작업장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 커다란 진전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인은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우리 가축위생당국이 추진하여야 할 주요 시책을 독자여러분들에게 밝혀 이해를 돋고자 한다.

수의시책 2001년 실적 및 2002년 계획

I. 가축방역시책

1. 2001년 멸종위기 폐지

❖ 사업 목표

구제역·돼지콜레라 청정화로 돼지고기 등 수출재개를 통한 축산업·관련산업의 발전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 ▶ 광우병의 해외로부터 유입방지 및 국내 발생 여부 확인
- 반추가축에 육골분 등 동물성 사료 및 남은 음식물 급여금지
- ▶ 2004년까지 주요 가축전염병(8종)의 근절·발생 최소화
- 균절대상 : 3종(소 탄저, 돼지오제스키병, 닭 뉴캐슬병)
- 발생최소화 : 5종(우결핵·부루세라, 돼지설사병, 닭추백리·티푸스)

❖ 사업 개요

- ▶ 구제역 : 재발 가능성성이 높은 봄철 특별대책

2. 추진실적

❖ 광우병

추진계획

- ▶ 발생국산 반추가축, 관련제품 수입금지 및 관련제품 감시
- ▶ 광우병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등
- ▶ 국내 사육소 모니터링 및 남은 음식물 급여 소(2,301두) 특별관리

기간('01.2.24~4.30)으로 설정, 범 부처간 공조체제를 구축, 방역활동추진,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국경검역은 지속적 강화

- 발생국산 우제류 동물 및 생산물 수입금지, 공·항만 검역 검색 소독강화
-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모니터링 혈청검사, 예방접종축 사후관리
- ▶ 광우병 : 국경검역, 국내 소 모니터링검사, 도축장 의심축 정밀검사 등
- ▶ 돼지콜레라 : 예방접종 100% 실시, 농장 혈청검사, 예방접종 중단
- 소규모 농가 접종지원, 위반농가 과태료 처분, 위험도 평가시험 등
- ▶ 닭뉴캐슬병 : 예방약 100% 지원, 농장·닭도축장 혈청검사 등
- ▶ 돼지오제스키병 : 모니터링 혈청검사, 발생지역 예방접종 및 감염돼지 살처분 또는 도축장 조기 출하 도태
- ▶ 기타질병 예방접종·혈청검사·검진·기생충구제 및 하절기 기립불능증, 사슴 만성소모성질병 등 특정질병 방역실시

추진실적

- ▶ 발생국가와 그 주변국까지 수입금지 - 31개국(EU, 일본 등)
- ▶ 소관 법령별 HS Code상 680개 품목 수입관리방안 마련
 - 멸균기준 강화 및 식약청, 세관등 유관기관 공조구축 등
- ▶ 장관주재(1회), 차관보 주재(2회) - 연구용역(서울대·한림대) 완료
 - 1,094두(연누계 4,137두) 검사
 - 사료관리법(3.28),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7.24) 개정
 - 남은 음식물 급여 소 6개월간 특별관리 ('01.8.13까지)

❖ 구제역

| 추 진 계 획 | 추 진 실 적 |
|---------------------------|--|
| <국경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국 수입위생조건 폐지 등 위생조건 운영 철저 |
| • 발생국산 우제류 동물 및 생산 물 수입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판소독조(306개소)운영 등 - 콘테이너·중고 농기계·나포 또는 피항선박 소독 |
| • 공항만 검역·검색·소독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은 기내식 폐기, 수입건조 소독, 휴대육류 검색폐기 등 |
| • 해외 여행객 홍보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 여행사 등 활용 홍보 - 기내방송, 전광판, 전단배포 등 - 농촌지역 해외여행자 등 홍보 - 농협 등 홍보인력지원(2,4천명/1일) |
| <국내방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공조체제 구축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시 도별 가상방역훈련 실시 혈청검사 예찰 접종축 관리 축산농가등 대국민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대책위원회 등 운영 • 소규모 농가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구성 및 장비등 지원 - 총 22회 실시, 방제차량 213대, 소독약 197백만ℓ 등 지원 - 농림부 지역담당관 등 점검(총 15회, 연인원 1,010명) - ‘01.3월 실시, 전용신고전화 설치 등 – 대책기간중 전국 가축시장 폐쇄 • 국제기준을 상회한 검사 실시 – 접종가축 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 신문 방송 담화문 장관서한 홍보비디오 녹음테잎 배포 등 |
| <청정국 인증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5월 OIE 총회 인증준비 • 일본 수출재개 추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9 OIE 구제역위원회및기타질병위원회에서 예정보다 8개월 앞당겨 청정국 인증 • 일본협상(4회), 설문서 답변 등 |

❖ 기타

| 사업명 | 추 진 실 적 | 추 진 실 적 |
|-------------|--|---|
| 돼지콜레라 근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100% 실시 - 혈청검사 : 287천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약 24백만두 공급 - 실적(11월말) : 281천건(98%) - 면역형성을 : 96.5% |
| 닭뉴캐슬병 근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위험도 평가시험 실시 • 지역별 예방접종 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8월 마지막 발생후 비발생 유지 평균 284농가 연 22,262두 음성 |
| 기타 질병방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약 100% 공급 • 혈청검사 확대실시 : 500천건 - 미접종 농가 과태료 처분 • 돼지오제스키병 등 19종 예방접종 및 겹진 등 추진 • 기립불능증 방지대책 • 시슴 CWD 방역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령개정 • 돼지콜레라등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01.1), 전국('01.12.1) – 제주도('98.2), 을릉군('99.12) 800백만수 공급 실적(11월말) : 472천건(94%) – 면역형성을 : 61% 추정 닭고기 수출기반구축 대책추진 – 경기도 지역 시범사업 착수 정규 사업계획에 의거 실시 – 돼지오제스키병 확산, 방역확대 7.18~9.15 방역추진결과 비발생 4농장 9두 발생 확인, 동거사슴 등 살처분 조치(30농장, 212두) |
|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전염병예방법령(1.26) – 시행령(7.24), 시행규칙(8.4) ※ 지자체에 대한 농림부·검역원 감독권한 강화, 건초 검역대상 신설 등 • 살처분가축등보상금지급요령(11.2) •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11.5)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11.30) • 결핵병·부루세라병방역요령(12.5) |

3. 성과

- ▶ 구제역 청정국 조기 획득에 따라 우리나라 구제역 방역 대처 능력 및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고,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 구제역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도 철저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추진한 결과 재발되지 않았으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기에 당초 예상보다 8개월을 앞당겨 획득하였음.
- ▶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발생위험도 평가시험 등 결과를 분석, 예방접종을 정부수립 후 처음 전국적으로 중단('01.12.1)조치하고 청정화를 선언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기반을 구축하였음.
- ▶ 축산농가와 관련단체 등의 방역의식이 고조되고 예방약 확대공급등 정부지원에 따라 닦뉴캣슬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되었음
 - 소 기립불능증 : 발생 없음 ('00년도 596두 발생)
 - 기타 돼지설사병, 가금인플루엔자의 발생도 작년대비 감소추세

4. 2002년 추진계획

가.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및 광우병 예방

1) 구제역 : 재발위험성이 높은 2~4월 특별대책 추진

▶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 또는 장관주재 특별대책위원회 개최로 부처간 공조체제 유지

- ▶ 장관 주재 시·도 부지사, 농협, 방역본부, 생산자단체장 회의
 - 일선 방역인력 결원 조기 충원 행자부 재요청
- 〈국경검역〉
 - ① 월드컵, 꽃박람회(안면도), 아시안게임 특별 검역대책 추진
 - ※ 꽃박람회(4.26~5.19), 월드컵(5.31~6.30), 아시안게임(9.29~10.14)
 - ▶ 행사 주관기관에 휴대육류 반입자제 등 검역·방역 협조요청
 - 행사안내서 등을 이용한 참가국에 사전홍보 및 양해서한 발송
 - 상대국 공항만에서 항공권 구입시 안내 리후렛 배포
 - 조직위 등 행사주관기관에 검역관 상주 파견
 - ▶ 주요 공항만 검역인력 기동배치
 - 사전에 행사기간·장소·구제역 발생국 참가자 동향파악
 - 동물검역설문서 배포 및 회수 철저로 검역 관리 강화(세관·항공사·선사 등 협조체제 구축)
 - ▶ 인천공항에 육류 탐지견 투입확대(2두→12두) 휴대육류 검색 강화
 - 세관 X-Ray 검색대 확대 설치분(4대) 조기 설치(관세청 협조)
 - ▶ 공·항만 발판 소독조(306개소) 관리 철저
 - 노후 소독조 교환, 소독약 보충 등
 - ▶ 구제역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콘테이너 등 소독실시

- ▶ 기내식·선식 등 남은 음식물 관리 철저
(진교부, 해수부 협조)
- ▶ 월드컵 중국 관람객 육로 입국시 임시 검역
소 설치·운영
- 구제역 발생지 방문 여행자 의류 등 특별소독
실시
- ▶ 꽃 박람회의 경우 식물검역과 공조체제
구축 등

② 일반 국경검역

- ▶ 강화된 수입건초위생조건에 의거 구제역
발생국산 건초의 상대국 소독후 반입,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육류 등에 대한 검역·검색
- ▶ 공해상을 통한 밀수와 밀입국 단속(해수부,
해양경찰청 협조)
- 피항, 나포선박의 검색 및 소독

〈국내방역〉

- ※ “전국 일제소독의 날” 정례적 소독 및 예찰·
혈청검사 지속실시
- ※ 소독의 날 : 1월(1회), 2~4월(4회), 5~10월(2
회), 11~12월(1회) 수요일
→ 축산관련 단체 발행 달력에 소독의 날 표시
- ▶ 소독 미실시 농가 적발 및 과태료 처분(200
만원 이하)조치로 농가 자율방역 분위기 정착
- 특별대책기간은 농림부 지역담당관이, 기타
기간은 축산국과 검역원 직원이 월 1회 이상
점검
- ▶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소독의 날 총 27회중
21회를 지급하고, 나머지 6회는 소독약품만 공급
- 축협조합의 소독방제차량(100대) 조기 지원

으로 소독지원

- 소독차량(213대), 고압분무기(207대) 및 소독
약 공급실태 일제점검
- 리후렛, 담화문, 전광판 이용 등 각종 홍보물
사전 준비(관계부처 협조)
- 특별대책기간 “전국 일제 소독의 날”(월4회중
1회) 농림부 지역담당관 현지점검 실시
구제역 신속 진단킷트(피비엠) 공동 연구
개발 추진(‘01.6~’02.12)

2) 광우병

- ▶ 광우병 발생국과 그 주변국가의 수입금지
조치 지속 유지 및 신규 발생국에 대한 신속한
검역조치
- ▶ 광우병 위험분석 및 위해 평가를 위한 Task
Force 지속 운영
- 4개팀(사료·수입물품·진단분석, 역학조사)
별 업무추진
- ▶ 국내산 소 검사 및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 정밀 검사
- ▶ 사료공장 육골분 등 동물성 원료 사용, 남은
음식물 사료공급실태 조사(분기별)
- ▶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 개발 및 방역조치를
위한 SOP 마련
- 연구용역 결과(‘01.12월말 완료)를 토대로 작성
- 국내 대학(수의대·의대)과 연계, 협력체계 구축
- ▶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국내 광우병 예방
조치 보고서 작성·제출

3) 돼지콜레라

- ▶ 양돈농가 홍보·교육 강화

- 예방접종 농가 적발,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조치(‘02.5부터)
- 가축방역 자동전화 홍보시스템(ACS) 구축 (검역원)
 - 농장 및 도축장 임상검사 및 항체(200천두)· 항원(42천두)검사 지속실시
 - 예방약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약사감시 강화
- 검역원·시도 공무원을 동원, 불시 점검 등 실시
 - 예방약 비축(5백만두분), 약품제조업체의 항원뱅크 이용방안 강구
 - 화란, 영국, 독일 등 돼지콜레라 발생국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추진
 - 대만 등 구제역 발생국은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폐지되어 있음

4) 공통사항

- 가상 방역훈련 실시 : ‘02.3월초, 과천청사 운동장 또는 축산농장
- 국제 공·항만 여행객 및 축산농가 대상 홍보 지속 실시
- 도축장·사료공장 등 출입차량 소독 실태 점검(분기별)

나. 닭뉴캣슬병, 돼지오제스키병 등 근절기반 구축

1) 닭뉴캣슬병

- 닭고기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 시범 사업 분석(‘02.1) 및 문제점 보완 후 전국 확대 추진

- 수출업체의 검사인력 지원, 예방접종 항체 기준, 닭 도축장 소독 등
 - 예방접종 100% 실시를 위한 예방약 공급, 미접종 농가 과태료 처분 제도의 정착(6월말 까지 제도) 및 혈청검사 강화
 - 이동간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접종확인서가 없는 닭의 도축제한)
 - 양계·계육협회에서 회원농가 자발적 홍보·교육 실시

2) 돼지오제스키병

- 방역본부 방역요원을 활용한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사업과 병행 추진
 - 발생지역(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은 감염돼지 이동통제 및 조기도태·예방접종 및 혈청검사 확대 실시(100천건→150천건), 비발생지역은 정기적인 혈청검사(200천건) 실시로 감염여부 확인

3) 부루세라병

- 발생 상재농장 예방접종 실시여부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상반기)
 - 젖소 이동시 가축위생시험소 발행 겸진카드 휴대 의무화 조치 등

다. 기타질병 발생 최소화 추진

1) 광견병

- 비발생지역 사육 개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은 수의사회 위탁방안 추진
 - 정부는 발생지역(경기·강원) 소, 개 예방

접종 및 야생동물 미끼 예방약 살포사업 확대
(2만두→4만두) 추진

2) 가금인플루엔자 모니터링 혈청검사 지속실시 등

- ▶ 검역원 “준차폐시설” 및 장비 조기 가동 후 (‘02.1 예정) 사용 극대화
-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바이러스 장비(9개소) 조기 구입·운영

라.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 지방위임사무 확대(살처분·이동제한 명령 등), 민간방역단체 지원(사업비 지원근거), 남북교류(육상 검역장소 지정) 규정 등
- ▶ 닭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 미접종 농가 적발 기준 및 절차 등 개선
- ▶ 주요 가축전염병별 방역지침(SOP) 보완 등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활성화로 정부 방역 역할분담 보완
 - 공동방역실시단 운영요령 고시제정, 역할분담 및 정부 감독규정 마련
 - 농협, 양계·낙농단체 등의 기부금 출연 분위기 조성
 - 공수의사·공익근무·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방역업무에 활용
 - 일제소독의 날 소독 등 민간방역 지원업무의 시장·군수 통괄 조치

Ⅱ.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강화

1. 시책·사업개요

❖ 목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로 국민보건 증진 및 수출경쟁력 확보

❖ 주요 시책

- ▶ 원료생산단계에서 제품 최종판매단계까지 (farm to table) 체계적·효율적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 구축
 - 축산물작업장에 SSOP, HACCP 등 선진적 위생 관리기법 적용으로 위생관리체계 선진화
 - 유통축산물에 대한 효율적 위생감시체계 구축
 - 위생관리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된 식용란, 의뢰도축 등에 관한 위생관리제도 보완

가. 위생관리제도 선진화(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등)

- ▶ SSOP, HACCP를 법에 규정하여 의무적용
 - 정책일관성 유지와 함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강력 시행체계 구축

“식용란”을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위생 관리근거 마련

타조와 같이 법상 가축은 아니나 공중위생 상 관리가 필요한 동물에 대한 정부의뢰검사(voluntary inspection) 근거 마련

동법시행규칙중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육거래기록 구비 의무규정을 추가하여 원산지단속, 위생문제발생시 역추적 등이 가능 토록 함.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후 유통허용 검토

나. 축산물작업장 HACCP 시행토대 구축

- ▶ HACCP 적용대상 도축장 확대(1일 도축실적 기준) 및 컨설팅
 - ('00) 소 100두, 돼지 1000두 및 닭 10만수 이상 작업장 (14개소) ⇒ ('01) 소 50, 돼지 500 및 닭 5만 이상 (37개소)
 - 축종별 HACCP 적용 도축비율 : 소 26.4%, 돼지 43.7, 닭 56.6%
 - 도축장 HACCP 컨설팅비용 보조 : 15개소(105백만원)
- ▶ 축산물가공장 HACCP 적용 확대
 - 적용품목 : ('00) 8개 품목 ⇒ ('01) 9
 - 적용업체 확대 : ('00) 31개 업소 ⇒ ('01) 37
 - 양념육류, 분쇄육, 아이스크림류 및 저지방 우유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30개소) 실시
 - 「축산물가공품 HACCP 적용매뉴얼」을 마련 유관업계 배포
- ▶ HACCP 시행 토대 점검 위한 시도 도축장 교차점검 2회 실시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미흡 도축장에 대한 행정 처분 실시
- ▶ HACCP 교육·홍보
 - HACCP 교육기관(수의사회, 한식연, 진흥원)에서 영업원, 축산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HACCP 교육 실시
 - 축산물작업장 HACCP 인증 추진사업 홍보책자 인쇄·배포(2만부)
 - 업계관계자, 관계공무원등 HACCP 단기연수 (농업연수부, 400명)
 -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0회 이상 교육 홍보자료 게재 등

다. 축산물 위생관리수준 향상

- ▶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 검사대상 물질수 : ('98) 30 → ('99) 44 → ('00) 45 → ('01) 73
 - 검사건수 : ('98) 83천건 → ('99) 89 → ('00) 104 → ('01) 85
 - 불합격율 : ('98) 0.01% → ('99) 0.15 → ('00) 0.07 → ('01) 0.18
- ▶ 식육중 미생물 검사
 - 검사대상 물질수 : ('98) 5 → ('99) 5 → ('00) 12 → ('01) 3
 - 검사건수 : ('98) 18천건 → ('99) 20 → ('00) 47 → ('01) 93
 - 불합격율 : ('98) 0.61% → ('99) 0.30 → ('00) 0.16 → ('01) 0.28
- ▶ 원유검사공영화
 - 참여율 : ('99) 65% → ('00) 85 → ('01) 100
 - 1등급 비율(세균수 기준) : ('99) 88% → ('00) 90 → ('01) 90

라. 유통 축산물위생감시체계 구축

- ❖ 위해축산물회수(Recall) 활성화
- ▶ 회수건수 : ('00) 1건 → ('01) 3
- ▶ 효율적인 Recall 실시 위해 “세부회수지침” 마련 「축산물 위생위험 긴급대처요령(위생 SOP)」 추가하여 시행
- ❖ 유통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 수거검사 및 불합격 건수/불합격률
 - ('99) 1016건(27건, 2.7%) → ('00) 1,307건(19건, 1.5%)

- ▶ 축산물 작업장 점검 및 위반업소/위반율
 - ('99) 703개소(210개소, 29.9%) → ('00) 2,164(137, 6.3%)

3. 성과

- ▶ Farm to Table에서 일관된 위생관리체계 지속 유지
 - 정부의지가 담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12.7 국화통과)
 - 축산물 생산·유통·판매단계에 대한 체계적 위생감시실시로 위해축산물 사전예방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
- ▶ 축산물위생관리체계에 HACCP, SSOP, Recall 등 선진적 위생관리기법 적용 활성화 및 확산 토대 구축
 - 특히, HACCP의 경우 시행초기 국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우려가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적용업소(도축장 28, 가공장 37) 및 업계의 높은 시행의지는 커다란 성과임.
- ▶ 그간 사회적으로 축산물로 위생관리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던 '식용란', '가축외 동물 식용생산물' 등에 대한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법적 사각지대 제거
- ▶ 원유검사공영화는 참여율이 98%로 완전 정착됨.

4. 2002년도 추진계획

- ❖ 축산물가공처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 SSOP, HACCP 미시행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 ❖ 타조등 가축외 동물에 대한 도살·처리 의뢰검사규칙 제·개정

- ❖ 식용란 검사규정 신설
- ❖ 축산물작업장에 SSOP 및 HACCP 강력 시행
 - 미시행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지도 단속 강화
- ❖ HACCP 적용확대
 - '02. 7. 1부터 1일도축기준 소 30두, 돼지 300두, 닭 3만수 이상 도축장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
 - 축산물가공품 적용대상 확대 : ('01) 9개 → ('02) 13
- ❖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소 SSOP 마련
- ❖ 식육중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 강화
- ❖ 도축검사체계 선진화
 - 식육검사원(Meat Inspector) 제도 도입방안 검토
 - 사슴·토끼·칠면조·거위·매추리 및 꿩 도축검사방안 검토
 - 의뢰도축규정 적용여부 검토 등
- ❖ 축산식품 안전전략 수립검토
 - 축산식품 위생관리의 기본 정책방향 및 향후 중·장기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전략 수립 (National Food Safety Strategy)
- ❖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후 유통 허용여부 검토
- ❖ 유통허용을 위한 국내 식육시장 유통상황·유통질서 등 검토
 - 유통허용시 냉동육 전환방법, 유통조건 등 마련



III. 수의업무 및 동물약품

1. 시책·사업개요

- ❖ 수의사의 질적 수준 및 대국민 동물진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수의사 면허 및 동물병원 운영 업무 추진
 - 수의사 면허·국가시험 제도개선, 동물병원 및 공수의 관리 및 지도, 대한수의사회 운영 활성화 및 지도·감독 등
- ❖ 동물약품 제조업체 육성을 위하여 KGMP 시설 개선사업 지원 및 병역특례업체 신규 지정 추진
- ❖ 동물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동물약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강화

2. 추진실적

- ❖ 수의사법 개정(6.21일 입법예고 12.7일 국회 통과)
- ❖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공수의 위촉대상을 확대
- ❖ 동물병원 관련업무를 시장·군수 업무로 지방 이양
- ❖ 외국 유학생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경과 조치 신설 등
- ❖ 공익수의관(가칭)제도 도입 준비
 - “공익수의관”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가축위생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 종사하는 자로 3년의 의무 종사기간을 마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함

※ ‘04년부터 배출되는 6년제 수의사부터

“공익수의관제” 도입 계획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관련자료 수집 및 초안 작성 완료

※ 공익수의관 소요 예상인원 : 연간 150명 수준
(연간 졸업생 515명)

❖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관련업무 추진

※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관련 현황 ('01.6기준)

| 동물병원 | 동 물 약 품 | | 동물약품 매출액(억원) | | |
|---------|---------|------|--------------|-------|-----|
| | 제조업소 | 수입업소 | 판매업소 | 판매액 | 수출액 |
| 2,602개소 | 88 | 89 | 743 | 2,934 | 61 |
| | | | | | 64 |

※ 동물병원 개설자가 인체용의약품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조, 약사법 개정('01.8.14)

-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약품구입 가능

❖ 동물약품 제조업체 KGMP 시설지원 : ('01) 10개소, 33억원

❖ 동물약품 제조업체를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신규지정('01.5.2), '0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배치(15개업체, 15명)

❖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약사감시 강화

- ('00) 545건 (적발 31건) → ('01) 1,500건 (적발 33건)

❖ 책임운영기관(수의과학검역원)지도 및 감독

❖ '01년 동물검역 책임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기본운영규정·사업운용계획 승인, 운영심의

- 회원(5인) 위촉, 평가지표 및 지표별 목표 수준 확정 등
- ▶ 책임운영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 체계 유지 및 강화
- ❖ 수의사 국가시험 및 면허증 발급 업무 추진
- ▶ 수의사 현황 : ('00) 10,783명 → ('01) 11,311명
: 증 528명
- ▶ 수의사 국가시험
 - 주 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행시기 : 매년 1월경
 - 응시자격 : 국내 수의과대학 및 외국의 수의 과대학 졸업자
 - '02년부터 외국 유학생은 외국 수의사면허 소지자만 응시 가능
 - ※ '02년 국가시험(제46회) : 원서접수 1월중순, 시험 1.31일 예정
- 3. 성과**
- ▶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공수의 위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수의 운영활성화 및 생산자 단체의 가축방역 기능 강화
- ▶ 공익수의관 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법안(초안) 작성 등을 완료하여 동 제도의 적기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 ▶ 동물약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대폭 강화하여 동물약품 품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질서 기반 조성
- ▶ 동물약품 제조업체 시설지원 및 병역특례 업체 신규 지정을 통한 산업요원 배치로 동물약품 제조업 활성화 지원

책임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추진하여 책임기관 운영 및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

4. 2002년도 추진계획

- ❖ 수의사 국가시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용역기관 :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10개대학 수의과 교수)
 - 연구내용 : '04년이후 출제방법, 과목, 시험 관리, 외국 제도 등
 - 연구기간 : '01.12~02.6, 용역비 : 20백만원
- ❖ “공익수의관(가칭)에 관한법률” 제정 추진
 - 2002년도 : 법률 제정
 - 상반기 : 공청회 등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 국방부, 병무청,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 2003년도 : 공익수의관 운영 소요예산 확보
 - 2004년도 : 공익수의관 제도 시행
- ❖ 6년제 수의사 처우 개선 추진
 - 주요내용 : 공무원 및 군 장교 임용 직급 상향 등
 - 관계부처 :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
- ❖ 동물약품 제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 동물약품 분야가 바이오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육성 지원방안 강구

❖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중앙 및 시도별 연간 지도계획을 시달,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위반업소 적발시 규제 철저

❖ 동물검역 책임운영기관 운영실적 평가

▶ 평가시기 : '02.2월~3월

▶ 주요내용 : '01년 검역원의 운영실적을 평가 지표에 의거, 평가

❖ 기타 : 수의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동물용의 약품등취급규칙 개정

맺음말

지금까지 본인은 농림부등 가축위생당국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였고, 금년 한해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를 밝혀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글이 최일선에서 가축방역업무, 축산물위생업무 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수의사 여러분들에게 관련업무 수행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농림부등 정부위생당국이 추진하는 업무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끝으로 본인은 한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이 글을 맺고 싶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부산 아시안게임, 한국·일본 월드컵축구, 안면도 세계꽃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최됨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국경방역 측면에서는 큰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즉, 이들을 통하여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축방역당국은 구제역 소독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안전하고 확실한 소동물 전용 귀세정제

에피오틱

Virbac

1. 특장점.

자극성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처방으로 귓속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Lactic acid, Salicylic acid가 함유 되어 있어서 광범위한 항균 작용 및 귀지 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 합니다.

2. 효능 및 효과.

외이염 예방 및 귀지, 이물제거, 귓속의 청결 유지

외이염 치료 시 귓속의 청결 유지 및 귀지제거로 치료 효과 증진

3. 사용법.

이도내에 제품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부드러운 솜으로 이도를 막은 후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증상이 없어 질 때까지 1일 2~3회 반복 합니다.

외이염 치료 약제 주입 전 본제를 사용 하여 세정 후 치료 약제를 주입합니다.